

'21. 7. 30 제정

'24. 3. 21 개정

ESG 위원회 규정

삼성중공업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정관 제 30 조의 2, 이사회규정 제 13 조의 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규정에서 'ESG'라 함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를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'ESG 자문위원회'라 함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'ESG 전담조직'이라 함은 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내 컨트롤타워를 말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.

제 6 조 (해임)

-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7 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년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의사록에는 의상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권 한

제 12 조 (부의 및 보고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사의 ESG 비전 및 전략 결의
- ② 회사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결의
- ③ ESG 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
-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3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5 조 (자문위원회)

- ①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ESG 전담조직 (이하 "전담조직"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전담조직에서 요청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.

제 16 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7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- 부 칙 -

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